

	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0. 12. 29.
		최종개정일자	2020. 8. 6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75조에 따라 목포과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08.06>

제2조(기능)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<개정 2014.1.27, 2020.08.06>

1. 등록금 상한제에 의한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 칙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4.1.27, 2020.08.06>

1. 교직원 대표 3명
2. 학생 대표 3명
3. 동문 대표 1명
4. 학부모 대표 1명<개정 2020.08.06>
5. 회계 관련 전문가 1명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직원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08.06>

제4조(추천 및 위촉)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·위촉한다. 다만,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을 임명한다.<개정 2020.08.06>

1. 교직원 위원 : 교직원 중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'대학' 이라 한다)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학생의 의견수렴을 잘 할수 있는 자
2. 학생 위원 : 대학 재학생
3. 동문 대표 : 대학 졸업자
4. 학부모 위원 : 대학 재학생의 학부모<개정 2020.08.06>
5. 회계 관련 전문가 위원 :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가

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·위촉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교직원 위원만 해당하며, 제7호·제8호는 학생 위원만 해당한다.<개정 2020.08.06>

1. 제3항의 자격을 잃었을 때<개정 2020.08.06>
2. 스스로 사임한 때<개정 2020.08.06>

3. 휴직하거나 퇴직한 때<개정 2020.08.06 >
4.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<개정 2020.08.06>
5. 직위해제 된 때<개정 2020.08.06>
6. 6개월 이상의 국외 연수를 하게 된 때<개정 2020.08.06>
7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<개정 2020.08.06>
8. 6개월 이상 교환 학생으로 파견되었을 때<개정 2020.08.06>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부모 위원 및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개정 2020.08.06>

- ②총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임명·위촉하여야 한다.
- ③총장은 위원이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하면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임명·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조 신설 2020.08.06>

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개정 2020.08.06>

1. 총장이 요청할 때
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3.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(긴급한 경우 3일)전 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공문으로 공지하고 각 위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료제출 요구) ①위원회는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,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조 신설 2020.08.06>

-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총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 작성·공개) ①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3인 이상이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.<조 신설 2020.08.06>

-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대학의

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2.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
③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< 조 개정 2020.08.06>

②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 등록금 책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조 개정 2020.08.06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